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 또 유찰

1개 컨소시엄만 입찰 참여로 나머지 일정 취소 전체 사업일정 차질 ... 2017년 3월 개장 어려워

【춘천】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공사가 또 유찰돼 2017년 3월 예정된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조달청과 건설업체에 따르면 도가 턱기(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의 사전심사(PQ) 서류접수 결과 대립산업을

대표사로 한 1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해 나머지 입찰 일정이 취소됐다. 지난해 말 사전심사까지 통과한 건설사들이 포기하며 한 차례 입찰이 무산된 이후 두 번째 유찰이다.

건설업체는 일부 업체가 개발 사업과 연계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참여를 검토했지만 예

산 부족 등으로 인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입찰 참여를 포기, 유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진입교량 공사를 비롯한 전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입찰 방식 결정 후 입찰공고, 적격심사·사전심사를 통한 시공사 선정, 실시설계 등에 이어 착공 후 준공까지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당초 개장기로 한 2017년 3월까지의 물리적으 사실상 어렵다. 또 중도

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 해도 방문객들이 중도까지 들어갈 수단이 교량을 제때 만들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이 돼 우리가 큰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내부방점을 정해 집행 방식을 결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진입교량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예정된 개장 시기에 맞춰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변방서 탈피 창조·자립경제 중심 도약 원년 만들자”

의미

강원 경제주체 총출동
지역경제 발전 모색
“인적 네트워크 강화
기업 활동무대 확장”

살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다”면서 “강원도는 그동안 역사적, 산업적, 지경학적으 변방으로 치부돼 왔지만 변방은 창조 공간이고 모든 역사는 변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변방에 있는 강원도는 지금부터 중심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는 역사의 함의고 시대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품질경영연구소 은세현 박사의 특강에서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업무품질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품질관리의 새로운 인식을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박사는 “격변하는 국내외 시장의 흐름속에서 항상 고객으로부터 선택받는 기업만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고객이 선택하는 기준은 오직 품질과 원가절감, 신속한 납품 등 품질관리에 있다”며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전 조직 구성원이 현재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품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혁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경우 1년안에 망할 수 있다”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의 사업영역을 진화시키고 활동무대를 넓히는 한편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문순 지사는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도 비상한 각오로 경제 성장론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한 인적쇄신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6조715억원의 국비확보를 통한 경제살리기는 기업인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 지사는 “도민과 출향도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6조원이 넘는 국비확보가 가능했다”며 “춘천~속초 철도, 어주~원주 철도 등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원도는 이제부터 대한민국 의 강원도가 아닌 전 세계의 강원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22일 원주 호텔인터플고에서 열린 2015 강원경제인대회 겸 신년인사회에서 최문순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주/서영

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3년 이끌어내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모두가 단결력과 조직력을 강화해 이 기간 최대한 성장을

주요 참석자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 △박승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회장 △김기선(원주)국

△강현숙 해림 대표 △김경숙 여대지 대표 △김광자 치악산호텔 대표 △김태경 강원골프 대표 △서영숙 비비에스 테리 대표 △손미애 크린 대표 △송미희 현대메디칼 대표 △신성숙 동양산업

원주/박현철 lawtopia@kado.net

담합 '5년' 지나면 입찰 제한 못한다

정부, 건설 담합 예방책 발표

공소시효 도입, '1사 1공구' 폐지
조사 중인 사건 신속 처리
임직원 벌금 '최대 2억' 강화

앞으로 5년이 지난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담합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 '1사 1공구'가 즉각 폐지되고, 상반기까지 주요 발주처에 입찰담합 징후를 찾아내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중인 담합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최근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공정위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에만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사의 입찰 담합이 적발돼 8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각 회사별로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이 예정돼 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토지구획공사(LH)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입찰담합 징후감지 시스템'이 개발·운영된다. 기관별 실정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인 담합 징후포착 시스템이 벤치마크 모델이다.

대형 국책사업에서 준공 기일 일수를 위해 권고해 왔던 1사 1공구제는 즉시 폐지된다. 단일사업의 공사구역을 여러 개로 나눠 발주하면서 1개 건설사가 1개 공

구만 수행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이 되려 담합을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 임직원에게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 규정을 공정거래법과 같이 '2억원 이하'로 대폭 높였다.

또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할 건설사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하게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담합사건의 조사와 처벌이 장기화되는 제도도 대폭 수습한다. 입찰참가 제한에 일종의 공소 시효인 '제척기간 5년'을 도입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제한 제도의 경우 위법성 정도, 책임의 경중 등을 따져 사안별로 제한 범위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바꾼다.

기재부 산하에 전담기구를 뒀서 사안별로 제재 범위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단일 사건으로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이 금지되는 폐해가 줄어든다.

공정위도 이미 인지한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합사건 조사와 처벌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산업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발주처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현지 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하고 대형 사업의 경우 정부 고위급 수주 지원단이나 외교 채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토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 기관마다 과제별 조치사항을 정리해 일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레고랜드 진입교량 턴키공사 또 유찰

유적지 보존 논란 맞물려
개발사업 전반 차질 우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가 또다시 유찰돼 유적지 보호 논란과 맞물려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차질이 우려된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강원도 수주의 이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결과, 대립산업을 대표사로 하는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잔여 입찰일정이 취소됐다.

지난해 말 PQ까지 통과한 참여사들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한 차례 입찰이 무산된 이후 벌써 두 번째.

업체는 몇몇 업체들이 개발사업과 연계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참여를 검토했지만 부족한 공사비 등으로 인해 수

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유찰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공사는 강원 춘천시 중도동(하중도)에서 근화동까지 교량 2개소를 포함해 총 연장 1.055k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770억원 규모다.

이로써 어렵사리 공사발주를 추진했던 수요기관인 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3차 공고는 물론 수의계약, 기타공사 전환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나, 어느 방식 하나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지역주민들이 레고랜드 예정부지 내 유적지 보존을 위해 공사 중지를 주장하며 법정다툼까지 벌이고 있어 당분간 진입교량은 물론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봉송권기자 skbond@

'담합=모든 공사 금지' 탈파... 사안별 제한 적용

사건 특성따라 입찰제한 범위·기간 정하기로
담합 연루 임직원 인사상 불이익 규정도 신설

세부내용

정부가 21일 내놓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대책에는 담합 연루가 기대했던 '그랜드 바겐(입찰처리)' 같은 파격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그랜드 바겐은 핵심 담합사건만 선별해 단시간에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2009년 영국 공정거래청(OFT)이 건설사 108곳의 담합 199건을 적발해 과징금 1억2920만파운드(약 2246억원)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년째 계속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와 1주일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 이중삼중의 강도 높은 제재로 고사 위기에 놓인 건설업계가 해법으로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땅콩 회항' 등 기업인의 일탈행위로 반(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면서 경제인 사면 논의마저 중단되는 등 그랜드 바겐을 추진하기에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 사법기관인 공정위가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에 난색을 표한 것도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다.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대책이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대책도 눈에 띈다.

입찰참가제한 제척기간=불합리한 규정이 정산된 사례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는 입찰참가제한에 대한 제척기간이 없다. 제척기간은 일종의 공소시효(소멸시효)로,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영금지(부정정당에 의한 재물취득)의 경우 제척기간이 5년이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위반행위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입찰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만약 이 규정을 지금 당장 적용하면 최근 공정위가 발표했던 담합사건의 상당수가 입찰참가제한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가 공소시효(5년)에 입박해 담합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처분은 공소시효(5년) 전에 나오더라도 입찰참가제한 처분은 제척기간(5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척기간도 없이 무한정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내려졌던 다소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안별로 입찰참가 제한=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담합사건의 특성에 따라 입찰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정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담합=입찰제한' 공식이 일률적·경직적으로 적용된다. LH가 발주한 공사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담합조사·제재 개선 주요방안

입찰담합 예방위한 환경개선	
발주처의 사전입찰제정 강화	기관별 입찰담합 징후 포착시스템 개발
발주처의 선진화	종합입찰제 도입 실시(공사비 제도개선 1차) 권주처 폐지
입찰담합 개인차별 강화	벌금 5000만원(이하) → 2억원(이하) 상향조정
건설업계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담합 처벌법 인사 불이익
담합관련 건설시장 불확실성 완화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참가제 조사, 신속하게 조치
입찰참가제한 합리적 조정	입찰참가제한제도에 5년 제척기간 도입 사안별로 제한범위 및 기간 결정
해외건설 수주지원 강화	발주처에 적극해명 실시

자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담합이 적발되면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참가 금지되는 식이다. 이 같은 획일적인 입찰제한 제도에도 유연성이 가미된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담합업체에 대해 발주기관이 입찰제한을 요청하면 기재부 산하 전담기구가 이를 신의해 제한범위와 기간을 결정한다. 전담기구에선 위반행위의 중대성, 책임의 경중 등 제연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여론이 휩쓸리지 않고 엄격한 잣대로 제재

위를 판단해줄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속한 조치=이번 대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입찰담합 위반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서 같은 말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주로 2009~2010년 발생한 입찰담합 사건에 중점적으로 제재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는 2010년 이후 발생한 입찰담합 사건을 조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2012~2014년 3년간 68개사에 1주일에 육박하는 과징금 폭탄을 안겨줬다. 이는 국내 건설사의 연간 국내공사 수주총액인 약 100조원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총 42개사에 매긴 과징금 8500억원은 해당 건설사 영업이익(561억원)의 15배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합동대책에서 공정위가 약속한 만큼 파격과 달리 신속한 처분과 조치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은 공정위가 권장해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용하고 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를 좀더 구속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만남!

건설경제 지면신문을
PC/스마트폰/태블릿으로

구독료: 월 25,000원
신문구독자: 월 5,000원
http://dp.cnews.co.kr

법적 처벌 후 정상 복귀하지 못하도록 '인사상 불이익' 규정 등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발주처에 구축하려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은 담합 차단에 발주기관을 적극 참여시키려는 의도다. 실제 철도시설공단은 이 같은 시스템 구축 준비 단계에서 담합을 적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합은 사후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발주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국토부, 종합심사제·실적공사비 개선 연내 마무리

‘공사비 제값 받기’ 디딤돌 구축

공공건설 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새 제도들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적자공사의 주범인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개편하는 작업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가격형 입찰제도의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할 종합심사낙찰제는 시범사업,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 결정방법 중 하나인 실적공사비 개편방안을 담은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공청회안과 내용은 같고 세부 추진계획을 부처 합동으로 합의한 것이다.

실적공사비는 2004년 국내 도입 후 10년간 1.5% 상승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공사비지수는 56.1%,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각각 상승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정보 수집단계에서 계약가격뿐 아니라 실제 시공가격, 입찰가격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수집해 반영한다. 실적공사비 명칭도 표준시장단가로 바꾼다.

김태형기자 kth@▶3면에 계속

1면서 계속=국토부, 종합심사제·실적공사비 개선 연내 마무리

공사비를 관리하고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발주청 위주였던 공사비산정위원회에 발주청과 민간이 동수로 참여하고 운영주체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부로 이관한다.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으로 건설연에 별도의 독립된 센터를 만들고 전문성을 보완해줄 상설 자문기구를 둔다. 독립 센터에는 건설업계, 건설협회 등 직원을 파견·상근시킨다. 또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수시로 조사해 실적공사비에 반영, 시장과의 괴리를 줄인다. 지역별·사업별 특수성도 반영해 실적공사비를 유연하게 보정한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적용 공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한다. 100억원 미만 사업은 영구 배제한다.

홍각기 등 사용빈도가 높은 공종 중 일부는 시장가격을 파악해 최우선적으로 보정한다.

국토부는 실적공사비 개선방안에 따라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작업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발주청의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지침 개정까지 마쳐야 연말이나 제도개선작업이 마무리된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11월까지, 계약예규 제정은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최저가 낙찰제와 실적공사비 개선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 저가경쟁 구도가 완화되고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공사비 책정 등 어려운 건설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강원도, 올해 30개 국도 건설사업 추진

5091억 투입... 원주~새말 등 신규 발주도 2건

올해 강원도 내에서 총 30개 국도건설 사업이 집행된다. 신규 발주사업도 2개 포함됐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은 2015년 국도6호선 서원~공근 등 30개 국도건설 사업에 전년 대비 55% 증액된 50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60%인 3054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사업면면을 살펴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접근도로망인 국도6호선 둔내~간평(45.2km), 국도59호선 내전~다평(18km)에 2149억원이 투입된다.

또 산간오지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도42호선 평창~정선3 등 16건에 1735억원이 집행된다.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도38호선 태백~삼척 도계 등 3건에는 잔여 사업비 1027억원 전액을 반영하는 등 조기개통에 힘을 기울인다.

신규 발주사업으로는 원주~새말, 영월~강림3 등 2건이 있으며, 실시계획을 거쳐 연말에 발주될 예정이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접근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에는 국도7호선 현대~송현진 1, 양구~남면우회, 철원~서면우회, 평창~정선1, 평창~정선2 등 5개 구간이 준공된다.

정희훈기자

지방도는 19곳에 781억 집행... 60% 상반기 집행

강원도는 22일 춘천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공사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기술력 함양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전실시공을 유도하는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국가지원지방도 4개소에 331억원, 지방도 15개소에 450억원 등 총 7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60%는 상반기 조기집행된다.

특히 올해 말 개통이 가능한 구간과 연결도로 및 교통요로 구간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우선적으로 개통하는 단계시공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남춘천IC 접근도로인 지

방도 403호선 참촌~발산 4.65km 구간이 개통되며, 굴곡부 및 기하구조개선을 목표로 추진한 지방도 408호선 원길~덕거 5.43km 구간도 전구간 완전 개통된다.

최희호 도 건설방재국장은 “도내 지방도 노선 중 미개통구간 확·포장, 주요 고갯길 터널화, 선형불량 구간 개량사업 등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이 산재돼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단기간에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면서도 “도내 어디서나 30분 내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도로망 조기구축을 위해 일선 현장까지 꼼꼼히 살피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도 지방도 사업 유공자 11명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정희훈기자

건설 전문가 상담코너

Q 당사는 금년도 직원채용이 있습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A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2014년 6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채용절차법 제3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1월1일부터,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16년 1월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구인자는 채용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과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위반 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

여야 하며, 채용서류 접수 시 접수사실을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며,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9조).

또한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할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시정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시 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여부 고지,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에 관한 법이 시행된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노무사
건설 노무상담 전문위원



제공 : 대한건설협회·상담신청 : 02-3485-8305, www.cak.or.kr